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11. 10 선고 2020가단267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소송대리인 A

피 고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D, E

변론 종결 2020. 10. 20

판결 선고 2020. 11. 10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, 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9. 3. 11. 접수 제126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 A은 2019. 2. 22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원고 B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2019. 2. 11. 매매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2019. 3. 7. 주식회사 하이하 모이라 한다)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, 이에 대한 담보로 2019. 3. 1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"채권최고액: 2억 4,000만 원, 채무자: F, 근저당권자: 피고"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.

다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8. 23.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,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, 5내지 7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주장의 요지

주위적으로,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는 원고들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에게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, 피고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예비적으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니더라도, 피고는 주채무자인 F에 대하여 지급불능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물상보증인인 원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.

나. 판단

(1)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가 피고에게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3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들이 F에 대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, 갑 제3호증과 을 제2호증에 있는 원고들 이름 옆의 인영들이 모두 원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될 뿐이다.

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. (2) 다음으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들이

주장하는 사유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.

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유지상

별지